

#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0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2. .  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개정이유

-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구 조정

- 담당관·과 조정 : 3담당관 28과 (변동없음)
  - 신설 : 광역교통과
  - 폐지 : 도시재생과

나. 정원조정 : 총 정원 1,103명 (변동없음)

다. 사무조정

- 자매결연,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: 자치행정과 → 기업지원과
- 한강둔치 내 수목 식재 업무 : 건설과 → 공원녹지과
- 한강제방, 덕풍천, 산곡천 수목 식재 및 관리 업무 : 건설과 → 공원녹지과
- 한강제방 내 시설물 관리 : 공원녹지과 → 건설과
- 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: 도시전략과 → 기업지원과
-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사항 : 도시재생과 → 문화정책과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**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**

**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**

**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**

○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

**7. 입법예고 결과**

가. 예고기간 : 2023. 11. 21. ~ 2023. 11. 26. [6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**

##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투자·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1항 중 “도시재생과”를 “광역교통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광역교통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	부서명	기획조정관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조정관 박춘오
	팀장 직위·성명	조직성과팀장 최윤미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정연호 (790-5543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안
<p>제7조(일자리경제국) (생   략)</p> <p>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5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6. · 7. (생   략)</p>	<p>제7조(일자리경제국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투자 · 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· 9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</p>
<p>제11조(미래도시사업단) ① 미래도시사업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전략과, <u>도시재생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미래도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   략)</p> <p>2. <u>투자 · 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3. ~ 12. (생   략)</p>	<p>제11조(미래도시사업단) ① ----- ----- <u>광역교통과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 <p>12. <u>광역교통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~ 11. (현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</p>

[별표 5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23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
총 계		1,103	1,103				
정무직 계		1	1				
	시장	1	1				
일반직 계		1,090	1,090				
	3급	1	1				
	4급	11	7	1	1	2	
	5급	59	31	2	6	6	14
	6급 이하	1,019	1,019				
별정직 계		6	6				
	5급상당	1	1				
	6급상당 이하	5	3	2			
연구직 계		6	6				
	연구사	6	6				

# 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

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※ 공무원 총정원 1,103명으로 변동없음

4. 작성자 : 기획조정관 박 춘 오